

②(경과조치) 이미 계약된 신문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·[별표 2] 및 [별표 7]을 다음과 (별지와) 같이 하고,

[별표 1]의 초등학교(북부)중 “서울용원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자운초등학교”란을, 초등학교(강서) 중 “서울목원초등학교”란 다음에 “서울염동초등학교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초등학교(북부)

번호	명 칭	위 치
52	서울자운초등학교	도봉구 창동 181-7

초등학교(강서)

번호	명 칭	위 치
57	서울염동초등학교	강서구 염창동 45-15

유치원(남부)

번호	명 칭	위 치
5	서울도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	영등포구 대림3동 741-3

유치원(북부)

번호	명 칭	위 치
4	서울신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	노원구 상계동 86-1

유치원(중부)

번호	명 칭	위 치
7	서울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	용산구 원효로2가 54

유치원(강남)

번호	명 칭	위 치
3	서울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	강남구 개포동 188
4	서울방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	서초구 방배동 861-1

유치원(동작)

번호	명 칭	위 치
6	서울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	관악구 봉천동 산 175-3

[별표 2]의 중학교(강동)중 “서울체육중학교”란을 삭제한다.

[별표 3]의 고등학교 중 “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”란 다음에 “둔촌고등학교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번호	명 칭	위 치
75	둔촌고등학교	강동구 둔촌동 79-3

[별표 7]의 유치원(남부)중 “서울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도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북부)중 “서울창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신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중부)중 “서울송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강남)중 “서울서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및 “서울방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동작)중 “서울난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, 유치원(성동)중 “서울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 다음에 “서울신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 및 “서울구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유치원(성동)		
번호	명칭	위치
4	서울신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	광진구 자양2동 591
5	서울구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	광진구 모진동 산 3-9

<p>[별표 1]의 초등학교(강남) 중 “서울구정초등학교”를 “서울압구정초등학교”로, “서울우면초등학교”를 “서울서일초등학교”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.</p> <p>[별표 2]의 중학교(강동) 중 “강동중학교”를 “송파중학교”로, 중학교(성북) 중 “쌍문중학교”를 “강북중학교”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.</p> <p>[별표 3]의 고등학교 중 “덕수상업고등학교”를 “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”로, “도봉상업고등학교”를 “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”로, “선린상업고등학교”를 “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”로, “시흥고등학교”를 “금천고등학교”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조례안 제2조(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) 제2항에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“다만 유통근대화 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</p> <p>조례안 제13조의2(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 등)제5항에서 근린생활시설, 창고시설, 노유자시설 이외에 “근린생활시설”을 추가한다.</p> <p>조례안 제21조(용자의 대상)제1항에서 3호를 신설하여 “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한 자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”로 한다.</p> <p>조례안 부칙 제2조(주차요금의 조성시기)에서 “96.11.1일부터 시행한다”를 “97.2.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</p> <p>조례안(별표2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<별표3> 부설주차장의</p>	<p>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 기준에서 “다가구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.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.7대 이상”을 “다가구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.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.6대 이상”으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 제목 “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”를 “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”으로 하고, 같은조 본문중 “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”을 “법 제12조의2 및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”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 영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근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로 한다. 다만, 유통근대화 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5조제2항 중 “수탁관리자”를 “관리수탁자”로 하고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다만,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,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.</p> <p>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0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등)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근린공공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, 전시시설,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.</p>
---	--